2019년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 지원과제 협약서

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(이하 "수행기관"이라 한다)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은 2019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 지원과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□ 내역사업명 :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

□ 협약과제명 : 클라우드 기반 농업 혁신을 위한 SW플랫폼 및 핵심서비스 개발

□ 협약당사자: (수행기관)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(위탁기관-주관)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
(위탁기관-참여) 메디앙시스템

(위탁기관-참여)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

(위탁기관-참여) 아이티아이즈

□ **협약기간** : 2019년 7월 1일 ~ 2020년 11월 30일(17개월)

※ 성과활용기간 : 협약 종료 후 5년 이내까지

□ 협약금액 : 1,269,275천원

(단위: 천원)

국고보조금	자기부담금		합계
현금	현금	현물	ᆸ곘
1,000,000	19,667	249,608	1,269,275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2019년도 협약과제(이하 '협약과제'라 한다)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"수행기관"과 "위탁기관"의 권리 ·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- 제2조(과제내용) 이 협약과제에 관한 세부 과제내용은 붙임의 '과제수행 계획서' 와 같다.
- 제3조(신의성실 의무) ① "수행기관"과 "위탁기관"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"위탁기관"은 과제수행계획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속히 착수하고 협약 기간 내에 과업 수행과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과제비의 지급) ① "위탁기관"은 자기부담금(현금)이 있는 경우, 과제비 신청 전 수행계획에 따른 자기부담금(현금)을 입금하여야 한다.
- ② "수행기관"은 "위탁기관"의 과제비 신청에 따라 과제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하며,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.
- ③제1, 2항에도 불구하고, 정부예산의 변경, 과제진도율 미흡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"수행기관"은 과제비의 지급시기,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**제5조(과제비의 관리)** ① "위탁기관"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과제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"위탁기관"은 과제비 집행내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에 입력하여야 하며, 성실하고 청렴하게 과제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"위탁기관"은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비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"수행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"위탁기관"은 과제비 사용잔액과 협약기간 내·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을 "수행기관"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"위탁기관"은 과제비 내에 편성된 신규 및 계약직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"수행기관"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.
- 제6조(결과보고) "위탁기관"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"수행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과제수행 및 보안조치) "위탁기관"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제8조(협약의 변경) "수행기관"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"위탁기관"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제비 및과제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9조(협약의 해약 등) "수행기관"은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과제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(시설물)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0조(권리 · 의무의 양도 제한) "위탁기관"은 "수행기관"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·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제11조(관계자료 제출 등) "위탁기관"은 "수행기관"으로부터 과제추진현황,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) ① "위탁기관"은 이 협약과제를 수행 . 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,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,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,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일부 준용한다.
- ③ "위탁기관"이 과제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"수행기관"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붙임: 과제수행계획서 1부. 끝.

2019.07.30



전담기관:

기관명 기관주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표자명 김창용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

주관기관:

기관명 기관주소

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**대표자명**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(중노송동)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


본 계약은 국가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 되었으며, 전자서명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